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9일, 이인선의원 · 조승래의
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인선의원 · 조승래의원)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의 경쟁력·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